

제429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8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7)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8)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6)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0)

상정된 안건

- | | |
|--|---|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7) | 2 |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8) | 2 |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 2 |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 2 |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 2 |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6) | 2 |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

2212440) 2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는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45)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272)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76)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440)

(10시08분)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에 보시면 각 7개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안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3쪽에 보시면 이것을 각각의 내용별로 묶어서 총괄표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사항부터 15번 부칙 내용까지 총괄적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맨 앞의 표지 바로 다음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조문별 검토를 그 내용에 따라서 15번까지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3개, 5개, 3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부 답변 들으시고 논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차 1번 사항은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를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배출권 할당 업종 구분 단위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 제12조의 내용은, 원래 현행 규정은 배출권의 할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상 할당대상이라든가 할당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은 할당대상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업체가 아닌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자구를 업체가 아닌 할당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할당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조기감축실적에 대해서 할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에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할당계획 수립 시에 현행 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혜 의원님 안은 ‘달성을 위하여’라고 자구를 변경하고 있고요. 이소영 의원님 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국가비전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안입니다. 무상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행연도별, 부문별, 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이 포함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획기간 중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즉시 할당계획 변경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권 유·무상 할당지표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이 지표를 비용발생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탄소집약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비용발생도와 탄소집약도에 대해서 산식이 나와 있으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에 대해서 전기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전기로부터 차기로 이월되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 이월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이 목차 1번 사항이 되겠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우측입니다.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각 개정안

의 내용을 통합해서 반영하되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업체 기준을 사업장 기준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수정이 안 된 조문이 있는 것 같아서 ‘업체’라고 표현된 자구는 ‘할당대상’ 등으로 추가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쪽 넘겨 보시면, 환경부 의견인데요. 예비분 수량 설정은 감축투자 신증설계획, 경기변동, 이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를 의무화하기보다 이월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수정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대비표의 통합의견에 참정적으로 반영해 놓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상할당 경매량 및 예비분 조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으로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거나 최근 1개월의 평균가격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배출권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으로 각 개정안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 제2호에 보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김소희 의원님 안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바꾸고자 하시는 경우고요. 다음에 호를 신설해서, 박지혜 의원님 안은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이하로 된 경우’ 이걸 추가하시는 거고요. 이소영 의원님 안은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시장안정화 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 내용은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조정,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100분의 25까지’라는 내용을 지우고 김소희 의원님 안과 이소영 의원님 안은 이걸 ‘활용’이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다음, 신설되는 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조정’ 그 내용을 추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박지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의 축소 조치’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 안은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이 내용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 28쪽, 안 제18조제3호입니다. 배출권 예비분 보유 요건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배출권 추가 할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활동’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시장안정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

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27쪽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이 문구를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으로 명확히 하고자 했고요.

수정의견 두 번째 보시면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면, 즉 이소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포함적 가격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준 가격 관련 조항, 지금 현행 1호인데 이 내용은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통합의견, 하단의 표를 보시면 1호를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이소영 의원님 안인데 이걸 1호로 하고요. 2호는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통합하면 될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장안정화 조치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해서 자구 수정하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이 문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시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23조 제2항의 통합의견은, 표에 보시면 1호는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그리고 3호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3번, 배출권 할당 취소 및 추가 할당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출권 감축 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할당 취소 강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동실적의 증가, 즉 추가 할당의 경우입니다. 또는 가동실적의 감소, 이는 할당 취소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추가입니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목차 3번까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첫 번째,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로 업체의 사업장 변경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이월량만큼 예비분 보유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화보다는 이월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두 번째, 유상할당 경매량 및 예비분 조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준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개정안 수정한 내용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페이지 배출권 할당 취소 및 추가 할당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산업부나 기재부는 같이 의견을 내시는 개념인 거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환경부 의견에 공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산업부도 환경부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6페이지 ③번에 보면 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해서 박지혜 의원안이 있고, 이소영 의원안의 문구가 조금 달라서 아마 이 부분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제 문구를 고집할 생각은 없어서 박지혜 의원안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또 같은 페이지 ⑤번에 전기이월량만큼, 지금 3차 계획기간에서 1억t 넘게 이월된다는 예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예비분으로 보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제 법안에 있는데 뒷 페이지 환경부 의견을 보면 예비분 설정 시에 이월량을 고려하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예비분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하도록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나머지 부분도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씩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숫자 기준으로?

○**조은희 위원** 하나씩 하지요, 하나씩.

○**박지혜 위원** 조문 자료 11페이지 이하부터 통합안이 쭉 있잖아요. 여기를 보고 쭉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방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12페이지의 1호와 관련해서는 제 안을 수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합의견이 2개 안을 합친 걸 가져오셨거든요.

○**소위원장 김소희** 통합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 통합의견이 이소영 의원님 안인 것 같아요.

○**박지혜 위원** 이걸 쭉 보면서, 조문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소영 위원** 제가 이 뒷 부분 통합의견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믹스해서 이렇게 둘 다 표현을 넣어도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그냥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정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계획을 만들 때 부문별 목표와 연도별 목표에 기속하는 방식으로, 산업 부문의 목표 배출량에 기속하는 방식으로 할당 배출허용총량을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국가비전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배출량 커버리지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목표 달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도 이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25페이지까지의 통합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차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업종 구분 단위 변경을 하는데 현행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에서 몇 개 정도로 늘어납니까, 분류하는?

○환경부차관 금한승 늘어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을 때 포스코가 사업장 10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9개 사업장은 본래 자 기들 업종인 철강을 하고 열 번째 사업장은 이제 다른 사업, 발전이나 열 공급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그걸 업체 단위로 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강하고 발전이나 열 이렇게 업종이 다른 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당을 해 줘야 되는데……

○서범수 위원 그래도 이게 세분화할 거 아닙니까? 업체 단위에서 예를 들면 사업장 단위로 넘어가면 좀 더 세분화될 거 아닙니까?

○박지혜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러프하게라도, 왜냐하면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한번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개 정도 업체를 지금 관리하다가 사업장이 1000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게 지금 저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장 단위로 하면 한 몇천 개가 되는데, 그거는 조금 러프하게라도 확인해서 한번……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사실은 이거는 기업에서도 원하는 거라, 왜냐하면 통으로 주기보다는 그 안에 여러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업체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가능합니다.

○박지혜 위원 기준에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포함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출량 통계를 이미 하고 있던 기업들을 세분화해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진행하실 때 손을 든 사람한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

면 마이크로 그냥 하면 두서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소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일단 환경부차관님께, 저는 사업장별로 배출량도 다르고 감축 노력도 다르고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장 대상으로 모니터링이나 실적 관리, 복합적 관리 이렇게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는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려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은희 위원** 기업들과 한번 상의해 보셨는지……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업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조은희 위원** 할당지표 변경 또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앞으로 기준이 되는 건데, 기업들이 지금 원한다고 그러시는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체크가 된 건지……

또 저는 지금 이소영 위원께서 정부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환경부 의견처럼 이게 고려한다고 맞다고 보이고요. 산업계에서 기업들이 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탄소 다배출 기업에 대한 부담 어떻게 조율됐는지, 탄소 감축을 압박하는 방향은 좋은데 법 개정에 대해 산업계가 걱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님, 답변드리면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조항들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첫 번째 조문에 대해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생각하고 두 번째 조문, 26페이지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조문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제가 먼저……

이게 지금 시장안정화 조치의 발동 요건이 있고 그 발동 요건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소위원장 김소희**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취지가 궁금했던 것 2개가요 하나는 발동 요건 중에 김소희 의원안 2호에, 기존 현행 규정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였는데 이것을 해당 연도의 배출권이라고 구체화하는 게 혹시 어떤 취지인지를 한 가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의 조치 내용 중에 박지혜 의원안 2의2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출권 축소 조치가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전지 일단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단기간 거래량이 폭등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리할 때 정부 개입을 자주 하신 편이 있어서, 그때마다 단기간에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시장 작동의 원리하에 해당 이행 연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정부 개입이 잦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혜 위원** 배출권의 축소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배출, 저는 시장안정화 조치가 최저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는 조치들이 새로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그때 시장가격이 최저한도보다 너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기존 유상할당을 처음부터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할당됐던 것을 경매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다양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배출권의 축소 조치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기는 한데요. 통합의견에서 조정한 문구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보면 일단 발동 요건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이나 환경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시지 않은 게 뭐냐면 26페이지 발동 요건 박지혜 의원안 3호는 나머지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최저가격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들이 3차 계획기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가격을 고시하면 그 이상에서 거래되게끔 하는 것, 이게 아마 캘리포니아나 EU 배출권거래제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발동 요건으로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 위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고시하는 배출권 가격 이하가 됐을 때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거지요.

○**박지혜 위원** 예, 조치가 발동하도록.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단기간 가격 변동의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신 거라고 이해가 돼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의미 있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의견에서 빼 버리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27페이지 오른쪽 통합의견에서 1호가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가격 하한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문구를 두 번째는 거래량의 변화니까 2호는 이렇게 정리된 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1호는 박지혜 의원님의 3호 내용을 좀 녹여서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장님, 잠깐……

○**소위원장 김소희** 부처 의견 먼저 듣고……

○**환경부차관 금한승** 이렇게 정리를 한 배경은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는 법에는 좀 큰 틀로……

○**소위원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첫 번째,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크게 변동하는 경우를 한 카테고리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배출권의 거래량, 양 자체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크게 잡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 이런 것들은 구체적

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실제로 지금 최저가격 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있어서 지금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을 조금 더 명확화하는 차원이라서 큰 틀의 법안에서는 최저가격…… 제 의견입니다. 최저가격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것을 다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뒷단의 다른 조문에 가시면 가격하고 수량으로 조정하는 조문의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이게 영 수정의견에 동의가 안 되신다면……

○**이소영 위원** 일단 박지혜 위원님 의견도 한번……

○**박지혜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이게 어떤 뜻으로하신 건지를 여쭤봤었는데 최저가격과 가격 상한과 하한을 다 염두에 두고 통합안을 제시하신 거라고 저도 이해는 했는데 그 문구가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두고 관리하자는 취지라면 조금 다른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김소희** 차관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시행령이, 지금 규정에 있지요?

○**박지혜 위원** 시행령에 있는 그 문구를 제가 참고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시행령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것을 법 조항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의문이거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사실 시행령에 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설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시행령 38조 6항에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있지만 상향해서 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실 건지는 결정해 주시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견이 많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조금 더 따로 논의하시고, 잠깐 보류하고 다음 조문으로 먼저 넘어갈까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규정을 보니까요 지금 법률 23조 2항에 ‘시장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시장안정화 조치가 열거되어 있고 거기 3호에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내려가 보면 38조 6항에 ‘이 법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지금의 시행령 규정은 ‘5000원까지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이 시점에서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조치를 취해야 돼. 이것 이하로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비상적인, 일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의 발동 요건 3호에 있는 내용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너무 폭락할 때

이것을 받쳐 주는 비상조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단기간 크게 변동하는 변동성의 개념에서만 규율되고 있는데……

예컨대 계속 몇 년째 1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도 경매를 이연하거나 유상할당 물량을 좀 많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저한의 매매가격을 매년 정부가 고시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이연이나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취지여 가지고 지금 시행령 규정하고는 취지나 적용 요건이나 이런 게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영을 법으로 옮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최저한의 가격을 정부가 고시하는 게 시장에 맞나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고시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조절해 가지고 가격을 설정하지……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 하셨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김소희** 4차 때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조문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는 게, 이게 과연 시장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의미로만 해서 일단은 검토의견에……

○**송재봉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면요.

○**소위원장 김소희** 송재봉 위원님.

○**송재봉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환경부차관 금한승**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송재봉 위원** 언제 있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21년인가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송재봉 위원**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낮다는 것 아니에요, 평가가?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지금도 낮은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를 발동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소위원장 김소희** 기존의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가 여기 시행령 규정에 보면 이렇게……

○**송재봉 위원** 기존 시행령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지금 현재 조건에 안 맞아서요.

○**송재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에 일정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종민 위원** 저도 질문 좀.

○**소위원장 김소희**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조금 전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상한, 하한을 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가격에 대한 제도의 개입이라고 하는 입법 결단인

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차관님 보기에…… 일종의 최저임금제같이 상당히 예외적인 시장 제한 조치거든요. 최저임금제도 제도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시장가격 조정에 제도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문제는 부담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일시적으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박지혜 의원님이 제출한 3항처럼 최저 거래가격을 고시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가격 조정 또 가격 유지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여기 박지혜 의원님이 주신 것은 정부가 최저가격을 정해서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게 시장을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걸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예측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 문구는 시간을 좀 주시면 박지혜 의원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대안 문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소위원장 김소희**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만 바꿔도 사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고시해서 그것 이하로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물량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한 제도고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더 세계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환 부분에 카본 프라이스 플로어(carbon price floor)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최저가격을 아예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떨어지더라도 발전소들은 최저가격을 항상 지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도 있거든요. 영국이 시장중심적인 국가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소위원장 김소희** 그런데 영국과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지혜 위원** 아니, 아까 유례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더 센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소희** 일단 수량하고 가격으로 하는 것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구를 조금 더 논의하셔 가지고, 원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넘어가시고, 여기서 지금 합의된 내용들은 그냥 통과시키고 두 번째 조문, 2번 통합의견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논의하시고요.

35페이지, 세 번째 조문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 앞부분은 방금 논의했던 부분 말고는 이견이 없어서 넘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3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데 히스토리를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엔가 포스코가 헌남노 때문에 공장이 침수

되면서 몇 달 동안 가동을 못 했는데 가동실적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줄었음에도 이미 할당받은 배출권은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남아돌아서 아무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고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횡재 이익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가동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을 때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서 이 36페이지의 시행령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9조의 가동실적이 감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헌남노의 경우인 거지요. 시행령 29조의 할당 취소 규정이 포스코, 헌남노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동실적이 줄었을 때 배출권을 뺏어 갈 거면 가동실적이 늘어났을 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그때 제기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행령 27조에 반대의 경우가 거울같이 미러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추가 할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동실적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공장이 그대로인데 가동실적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늘었을 때도 추가 할당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법에 옮린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저는 할당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급한 권리를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원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당 취소는 법률로 상향해서 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배출권거래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추가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시행령 규정만으로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사실 이런 논란도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35페이지의 개정안 주요 내용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가동실적의 증가, 추가 할당 부분은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이게 지금 아마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감축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배출권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시행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동실적이 감소했을 때 어떤 조항이 들어가면 증가했을 때도 형평성 있게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산업계에서 있어서 그걸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산업계 의견, 실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지금 차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일시적으로 생산량 굴곡이 계획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한쪽, 줄었을 때만 빼어 가고 늘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조치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산업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나요? 지금도 늘어났을 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그러니까 현행 시행령에 따라 추가 할당을 해주는 부분을 법률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남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앞서 이소영 위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스코, 힌남노 때문에 그때 어쨌든 포스코가 공장을 못 돌려 가지고…… 공장을 못 돌린 피해액은 몇조 단위라서 더 컸습니다. 남겼던 배출권으로 수익을 얻었던 것은 기껏해야 3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그 피해액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남는 배출권으로 거래했던 300억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기업을 대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상 기후에 있어서 기업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의견들…… 포스코, 힌남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당 취소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정부가 ‘지금 갑자기 에너지가 부족해서 공장을 더 돌려라’ 그렇게 할 때 산업계는 ‘그러면 가동 실적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취소 부분이 있으니까 증가 부분도 법률로 같이 올려야 되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서범수 위원 그런데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가동 실적의 증가 때는 추가 할당하고 가동 실적이 감소할 때는 할당을 취소한다는 시행령이 있는 걸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그대로 놓고 해 버리면 나중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균형을 못 잡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님,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양쪽 다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좀……

○소위원장 김소희 예.

○이소영 위원 실장님, 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배출권거래제라는 게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돈을 내고 감축을 하면 돈을 덜 내고, 안 내고, 이게 이 제도의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증가했을 때랑 감소했을 때랑 동등하게 봐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성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감소했지만, 이게 다른 이유로 굉장히 크게 감소했어도 당초에 줬던 할당을 축소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덜 내고에서 그 덜 내는 만큼을 가져가는 행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증가했을 때도 어떤 기준하에서는 추가적으로 할당을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소영 위원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증설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 할당이 법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지어서 생산시설 늘리는 것은 있고요.

이 가동실적의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씨 사례가 있지요, 포스코, 힌남노. 아무런 감축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침수가 돼서 공장이 셧다운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신증설이 아니면서 정당한 사유로 가동실적이 갑자기 급증해 가지고 국가가 무상으로 배출권을 추가로 줘야 된다는 게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지금 당장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가적 경제 공급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소영 위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예를 들면 지금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 보시면 요즘에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실제 소성로가 한 6기 있다고 그러면 한 3기는 놀고 있거든요. 그것은 신증설은 아니지만 향후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기존에 놀고 있던 3기를 다시 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쪽에서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런데 차관님, 그것을 고려해서 산업 전망을 하고 BAU를 만들고 그리고 업체별로도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으로 쌓아 가지고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그렇긴 한데요 제가 위원님 취지를 공감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2030 NDC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그게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전망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석유화학산업이 어려운 것처럼 저희가 예측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국내 사정에 의해서 해당 업종이 조금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행령을 입안할 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령 할 때 감소하고 늘어나는 걸 같이 담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배출할 양을 정확히 예상해 가지고 그만큼 할당을 해 주고 예상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생겼으면 추가로 더 할당을 해 주고 이럴 거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감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기업들 사이에서 의무를 나누는 룰을 정했고, 그 룰만큼은 꼭 줄이되 그 이상의 배출을 해야 되는 상황, 경제적으로 그게 더 합리적인 상황이 되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하라고 하는 게 이 제도를 굳이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동량이 늘어서 배출량

이 는 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해 준다는 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보류로.

○김종민 위원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소영 위원 의견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실적, 가동실적을 측정해서, 전망해서 설정을 해 놓는 건데 제가 봐도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특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실제 현장의 이노베이션이 확 이루어져서 되는 경우인데 그런 사회적 수요나 기업의 수요 또는 이노베이션에 의한 경우든 하여간 그게 이 기업의 뭔가 실적의 증가거든요. 그 실적의 증가에 맞춰서 배출권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거라고 보여지니까 실적에 맞춰서 좀 더 추가 할당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형식적인 균형은 모양이 갖춰져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법의 취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부담이 커지게 만드는 그런 취지가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소희 조은희 위원님.

○박지혜 위원 먼저 하시지요, 먼저 손 드셨으니까.

○조은희 위원 먼저 하시지요.

○박지혜 위원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됐고요. 원래의 법령에는 가동실적의 감소일 때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있었는데 사실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가동실적이 증가했을 때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개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을 계기로 가동실적의 증가 시에도 추가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의 이용우 의원안에, 86페이지에 시설의 가동실적 감소로 배출권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 시’를 ‘15% 이하 감소 시’로 해 가지고 법률에 올리자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할당 축소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몇 퍼센트 이상 감축, 할당량이 줄었을 때 이런 감소 조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85% 이하로 감소 시’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옮리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도 받아들인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해서 심사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충론은 박지혜 간사님 말이 맞고 각론은 좀 달라요.

저는 배출권 할당 축소를 하면 가동실적이 높은 부분에서도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간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거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 충론적으로 박지혜 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의원안하고 같이 해서, 이용우 의원안을 지금 가져와서 하지 않고 좀 넘겨서 저희들……

○소위원장 김소희 이용우 의원안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넘겨서 하자……

○조은희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런데 여기가 메인은 할당 취소 부분이, 취소 때문에 생긴 법안이에요. 그런데 취소만 하면 되지 왜 추가 할당까지 하냐 거기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됐는데 가동실적의 증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 법 보시면 36페이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여기 이 부분에서 ‘증설 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빼잖아요? 그러면 시행령도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당 취소가 중요하면 취소에 포커스를 맞추되 증설은 법조문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저도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배출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공장이 생산량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제재하느냐, 제재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공장을 어떻게 녹색 전환 그러니까 저탄소, 탈탄소로 이끄느냐가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취소, 감량만 너무 한다면 생산이 문제인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요. 이 제도를 설계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저탄소로 이끌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도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박지혜 위원님, 마지막으로……

○박지혜 위원 추가적으로……

생산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출권으로 생산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그런 취지의 의견 제안은 아니다.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송재봉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법의 취지를 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데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감축 노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산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탄소 감축이 돼야 산업계도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김소희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물론 이 배출권 자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산업과 경제가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같이 가 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배출권 내지는 탄소중립에만 너무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같이 원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배출권 관련해서 탄소중립에만 초점을 둬 버리면 또 다른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동실적이 증가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원칙적으로 원칙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취소가 발생하고 증가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방향성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할당 취소 부분에 해당돼서 가동실적을 법에서 빼면 시행령 자체에서도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뒤 38페이지에 있는 조문 자료를 보시면 증설을 법에서 빼면 시행령도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송재봉 위원 증설을 빼자는 의견은 아니었고요. 증설까지는 동의를 했고……

○박지혜 위원 증설은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현행법을 그대로 하자……

○박지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행령이 먼저 개정되면서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사례를 추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자는 건데 조금 무리가 있다.

○송재봉 위원 실적만 빼시지요. 실적을 빼면……

○박지혜 위원 가동실적의 증가……

○송재봉 위원 가동실적 증가를……

○소위원장 김소희 산업부 실장님,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할당 취소 부분에 대한 쟁점 법안이 또 뒤에도 있어서 저희가 뒤에 같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장님, 잠깐만 보고드리면 송재봉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기업들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법은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돼서, 15%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왔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장 가동이나 발전소 가동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15% 이상이 빼졌을 때 줬던 배출권을 도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15% 이상 증가가 왔을 때는 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할당하는 배출권이 NDC나 국가 목표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량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조화를 맞춰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일단 합의가 안 된 관계로 넘기고……

다음 네 번째부터, 박정 의원님 안이 조문상 다 한꺼번에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예. 목차 4번부터 8번까지가 박정 의원님 안인데요, 이것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목차 4번 항목입니다.

배출권 시세조작행위 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 이렇게 자구를 수정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유사입법례를 고려해서 시세조작행위 등에 대해서 별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 놨습니다.

유사입법례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를 그대로 거의 인용을 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음, 46쪽의 목차 5번 항목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시세조작 금지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내용입니다.

네 가지 사항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당한 시세조작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요. 둘째, 시장참여자의 예탁금 임의사용 금지. 셋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해산, 파산 등의 경우 증권금융회사가 시장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넷째, 예탁금 지급을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예탁금 지급 채무 소멸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하위법령의 위임 근거 마련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역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제공 정보의 범위, 암호화 등 처리 방법, 투자자 정보의 분리 보관, 기간 경과 시 투자자 정보 삭제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했고요.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의 목차 6번 항목,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관련 조항 신설입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 등록 시에 거래계정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둘째, 주무관청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급증으로 시장안정성 저해 시 거래계정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이 과도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59쪽의 목차 7번 항목입니다.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 내용입니다.

첫째는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필요 시에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자구 수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 명확하게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의 목차 8번 항목입니다.

검증기관 및 검증협회 감독 강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등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으로 현재 1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증심사원은 검증의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업무기준에 따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349명이 등록된 상황이고요. 온실가스검증협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검증 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기관이나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를 취소하고요. 둘째,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셋째, 주무관청의 온실가스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검증기관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먼저 41페이지, 배출권 시세조작행위 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배출권거래제 시세조작 금지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이라든지 또 개인정보제공 범위 명확화라든지 이 개정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관련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한 대로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도 검토보고 수용하고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검증기관 및 검증협회 감독 강화도 검토보고 수용하고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소영 위원**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내용으로 보여서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중심이어서 이것을 반대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조금 사소한 부분이지만 59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이 법이 또 바뀌어야 돼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마 저희도 지금 그런.....

○서범수 위원 그렇잖아.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네요.

○서범수 위원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또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마 그것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일괄해서 아마 다 바뀌는 것으로, 일괄 수정될 것으로.....

○서범수 위원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조금 축소되잖아요, 지금 나온 것에 의하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어쨌든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금감원하고.....

○서범수 위원 아니아니, 제 이야기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지만 그 밑의 금융감독원 자체가.....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다 이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김소희 4번부터 8번까지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위원장님, 잠깐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이게 아마 금융위에 의견조회가 안 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아, 그런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그래서 7번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의견조회가 안 됐나요? 안 됐나 보네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금융위한테 방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다, 시간을 주시면 의견을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서범수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네요.

그러면 4번, 5번, 6번, 8번에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7번은 잠시 보류하고 9번부터 11번 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차 11번 항목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9번 항목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증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2016년 12월 3일 이후 시작한 사업으로 적용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목차 10번 항목입니다.

총 무상할당비율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배출권 정의에 2050 탄소중립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총 무상할당비율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이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목차 11번 항목,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참고표로 된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 즉 상쇄배출권을 배출권의 제출에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상쇄배출권 설명 내용을 인지하시고요. 현행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100분의 10 이내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100분의 5 초과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소희** 예.

○**이소영 위원** 12번이 10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10번은 총 무상할당비율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건데 12번 중 하나의 내용이 그 내용을 얼마나 하자거나 법에 넣자거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하자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12번까지 같이 논의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같이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그냥 다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토론이 될 거라 12번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2번 항목입니다.

무상할당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열거돼 있습니다.

첫째는 배출권 할당의 원칙 변경입니다. 현행은 ‘유상 또는 무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유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무상할당비율 한도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에서, 즉 법률로 정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 되겠고요.

둘째는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내로 하는 내용을, 이소영 의원님 안

부칙 2조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일단 이 내용에 적시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시행령에서는 3차 계획기간의 경우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배출권 무상할당비율 설정 시에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과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을 준수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부처가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소희** 예.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9번의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증 기준 강화의 이소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 무상할당비율 정의 규정 신설이나…… 일단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에 관한 부분,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산업부의 신중 검토안보다 항상 환경부안에…… 지금 이 2건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저는 산업부 신중 검토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계 의견은 어떤지 또 환경부와 사전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무상할당비율을 규정하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는지 또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 같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는지, 계속 일률적으로 5%가 적당하다고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산자부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일단 수석위원께서 9번부터 12번까지 설명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환경부 의견 듣고 지금 조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다 포함하여 가지고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각 조문별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증 기준 강화 내용은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72페이지의 총 무상할당비율 정의 규정 신설은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배출권 정의에 반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총 무상할당비율이라는 정의 신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총 무상할당비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상쇄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과거에 100분의 10, 10%로 할 때도 있었고 5%로 할 때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규정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개정안 주신 대로 5%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일단 산업부하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무상할당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출권 할당의 원칙과 관련해서 박지혜 의원님이 의견 주신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의견이고요. 나머지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본문에 적용한다든지 부칙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무상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무상할당 차등 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배출권 무상할당비율, 이소영 의원안 제12조 5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산업계와 기타 다른 정부부처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산업부 말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있다고 한 부분은 72페이지의 10번 무상할당비율 정의 규정 신설인데요. 정의 규정 자체를 법에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상할당비율을 기본계획에다가 적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본계획에 따른 할당계획에서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할당계획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고. 유상할당비율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현재에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계획 단계에서 무상할당비율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76페이지, 상쇄배출권 관련해서는 환경부차관님께서 이제까지의 실적 자체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5%나 10%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상쇄배출권과 관련된 규정이 최근에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 향후에 이 상쇄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외부 감축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중에 할당업체가 아닌 비할당업체들의 탄소감축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 안에서의 탄소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상쇄배출권 한도를 줄여 놓으면 혹시 대기업들이 그 수요를 넘어서서 협력업체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가 더 되는 방향에 조금 저해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행 한도 10% 수준은 그냥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78쪽의 12번 항목, 무상할당비중 50% 적용은 환경부차관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무상할당비율을 법률에서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항목별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지금 9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9번은 딱히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0번, 11번, 12번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10번부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운영해 오면서 유상할당비율 10% 이렇게 해 놨는데 산업 부문에서는 비용집약도라거나 탄소누출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유상할당대상이 되는 업체가 1% 남짓 될까 말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실제로 3차 계획기간에 전체 할당된 전체 배출권 대비 유상으로 할당된 비율은 4%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나 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상할당 10%라고 하는 전체적인 제시 자체가 실제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4%와 10%는 굉장히 큰 차이니까요, 그래서 총 무상할당비율 그러니까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을 법이나 계획에서 이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3차 계획기간에서 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특위에서 환경부에 질의할 때까지는 모르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목상의 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율을 정의 규정에 넣자는 얘기였고.

아까 산업부 의견이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서 의견은 없는데 제 내용이 기본계획에다가 총 무상할당비율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아니라 할당계획 단위에서 이것을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예, 그러면 그 조항은 합의된 것으로.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 법안에는 기본계획 조항에 그것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당계획에 반영하는 전문위원의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예,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10번 의견 끝나신 건가요? 더 주실 건가요?

○조은희 위원 정부 측 의견 좀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정부 측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마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소희 11번, 12번은.....

○박지혜 위원 12번 상쇄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실장님, 아까 사례로 들었던 대기업들이 할당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감축을 시켜서 상쇄배출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예산을 150억 정도 정부도 지원해 가면서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아마 공급망 파트너십을 하셔도 대부분의 공급망 협력사는 감축 부담이 있는 업체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상쇄배출권의

문제는 자꾸 외부에서 감축을 할 노력들을 기업이 사들여서 추가 배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배출허용총량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좀 축소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제안 배경이고요. 실질적으로 5%, 지금 현재 상쇄배출권 활용되는 수량도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타격도 적다. 다만 5%로 정함으로써 조직경계 내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감축해라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개정안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일단 정부 측 의견 듣고 김용태 위원님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급망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스코프 3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10% 정도로 주어져 있었던 상쇄배출권을 구태여 5%로 줄여 놓고 시작하는 것이 업계의 입장에서는 조금 제한이 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박지혜 위원 공급망 파트너십 사업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사실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도입된 이후에 계속 해 왔던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외부사업은 농업·건물·수송 부문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보조금을 타 가지고 전기버스로 전환한 다음에 그 실적을 기업에게 파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부보조금으로 수송 부문에서 우리가 감축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썼는데 그것을 기업이 돈을 주고 사 가서 추가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송 부문 감축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포션이 늘게 되면 사실 더블 카운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줄여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의견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저는 이 법안을 제기하셨던 박지혜 의원님의 배경에도 취지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다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리협정 제6조와 관련해서 이제 막 국제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이 6조와 관련해서 상쇄배출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로 지금 6조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서 상쇄배출권과 관련한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시행령에서 100분의 10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법으로 다시 100분의 5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의 탄소 상쇄배출권에 대한 경쟁력을 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박지혜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도 전문가로서 박지혜 위원님의 견해가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잘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또 하고 그런 것이 낫지 이것을 갑자기 5%로 줄일 경우에 상쇄할 부분이 사라진 기업의 부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 너무 한꺼번에 매를 많이 때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이것 때문에 추가로 맞는 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조은희 위원 아니, 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맞아요. 맞지만 좀 천천히 가고 조금씩 먹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시행령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법으로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제 감축 부분을 우리가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 그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또 열심히 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비단 너무 국내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법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한말씀…… 국제감축 예상 실적 부분은 어쨌든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이미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를 법으로 해서 0.5%로 낮췄을 때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로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죽했으면 시행령에서 법안으로 올렸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이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예.

○박정현 위원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논의할 때까지.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상쇄배출권의 신뢰성이 뛰어나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짚싸게 의무를 대체하는 변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의 고민으로 이 안이 발의되어서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3차 계획기간에서 상쇄배출권 사용된 게 한 2%, 3% 정도인 걸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은 오늘 쟁점을 좀 정리해야 되는 회의이기도 하니까요.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셨고……

○소위원장 김소희 저는 기본적으로 3차 계획기간까지는 배출권거래제가 잘 작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차에는 제대로 좀 해 보자라고 해서 NDC부터 시작해서 CAP(배출허용총량)부터 해서 무상할당, 굉장히 더 강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기후특위의 기본 원칙이잖

아요. 그러면 그 원칙하에 유연성 제도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게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입니다.

그 유연성 제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쇄의 부분이고, 이소영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쇄 부분에 대한 감축량 인증이 좀 못 미더운 부분들도 많아서 그것을 강화하겠다라는 9번의 조문도 지금 통과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반이 갈린다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12번이 제일 오늘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위원장 김소희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통과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당겨서 할까요?

○이소영 위원 아니, 근데 12번 중에서도 쟁점이 없는 부분이 있고……

○박지혜 위원 앞서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2번 조문입니다.

○박지혜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예.

○박지혜 위원 유상할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까지 동의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유상할당 원칙은 동의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거기까지는 동의.

○이소영 위원 1번은 논점이 아닌 것이라고요. ②, ③번은 합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소위원장 김소희 숫자를 포함한다 여부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총 무상할당비율, 실질비율 기준으로 유상할당을 20% 하자는 취지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고.

⑥번 부분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양보를 하자면 지금 여기에 조금 요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12조의 위에 있는 규정이 곧 탄소집약도 높은 업체의 경우에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요.

5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부는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과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게 제 안이거든요.

아마 짐작하기로 산업부에서 아까 앞부분에 10번 쟁점에서 총 무상할당비율을 기본계획에 넣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 5항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한 취지에서 반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그 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제외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바꿨을 때 제가 아까 10번에서 양보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기존 문구가 4조 2항 3호의2에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관한 사항’ 이게

현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표현을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5항으로 넘어가면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아마 정부에서도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5항의 문구를 앞은 생략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쟁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지요.

○**이소영 위원**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⑤항에 제가 제안한 게 차등 적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정부랑 얘기를 해 보면서 정부가 이 취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를 지금 어디 문구를 보시면 되냐면 비용집약도, 무상할당비율 관련해서 몇 페이지에 있지요?

○**송재봉 위원**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인가요?

○**이소영 위원** 어디요?

○**송재봉 위원** 83페이지 하단에요.

○**이소영 위원** 83페이지요?

○**소위원장 김소희**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

○**이소영 위원** 제가 출력해 온 거랑 페이지가 다른가 봐요.

하여튼 그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출 많이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현행 규정이, 현행 규정 보시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호, 2호가 나오거든요. 지금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비용발생도든 탄소집약도든 이 기준 안에 포함되면 그냥 유상할당 0%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무상할당인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가 유상할당 해라, 무상할당 안 된다 이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 대상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당계획이나 이런 시행령에서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차등 적용하는 거니까 0%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00%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게 현행 규정이니까 마치 이 1호, 2호에 해당하면 100%를 전부 다 무상으로 할당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0~X% 사이에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자는 취지라서 정부의 재량권을 오히려 늘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이게 왜 반대의견이냐 여쭤봤더니 이게 무조건 하나라도 유상할당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셨다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취지라고 하면 이게 사실 별로 센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할당계획에서…… 이게 비용발생도도 사실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는 100% 무상할당 또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거보다 더 낮은

무상할당 이렇게 차등해서 하자는 취지여서 이 정도면 동의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 문구 그대로?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소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쟁점이 아닌 건가요? 산업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저희는 일단 아직,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셔서 처음 들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산업 부문 쪽, 산업계 의견하고 좀 조율을 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일단 산업계에서는 이 특례업종 또는 탄소누출업종에 해당되면 국제적으로도, 이를테면 유럽처럼 CBAM을 가지고 있으면 탄소누출의 우려를 다른 식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상할당에서 제외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에 아직 안 와 있기 때문에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뭔가 특례를 줘왔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산업계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소영 위원 실장님, 어차피 이 모든 게 회의록에 남으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탄소누출업종에 100% 무상할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고요. 다른 국가들도 산업 부문의 탄소누출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의 문구가 그냥 이 요건에 해당되면 전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발생도라든지 탄소누출도 이런 수치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도 충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업종도 있고 아닌 업종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그냥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거를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10%, 20% 정한 유상할당비율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문구를 완화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은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고 저는 ‘이들에게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서 기준처럼 100%를 무상할당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레이어와 충위를 고려해서 이를 할당계획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불과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님 말씀 지금 잘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은 산업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바로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산업부가 의견을 좀 정리해 올 때까지 차등 적용 부분은 보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도 그냥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 개정법률안하고 이소영 의원님 개정법률안이 유사한 취지 같거든요. 저는 ‘유상할당 목표비율’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이소영 위원님께서는 ‘총 무상할당비율’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의 수치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탄소누출업종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방금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숫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상할당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재량을 두어서 유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마련을 하자는 취지가 지금 이소영 의원안과 제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위원님은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표현하여 주셨고 저는 ‘해당 기준에 속하더라도 일부는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서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위원님, 업계에 그렇게 잘 전달해서 업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구가 산업계에서 받아들일 때 좀 오해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바로 의견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관련해서 의견수렴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에 탄소누출업종과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지금 유상할당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CBAM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논의도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U 같은 경우가 CBAM을 하면서 탄소누출업종도 이미 유상할당 스케줄을 고지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다배출업종들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해라, 그런데 그만큼 지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라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게 해 줄게’, 약간은 이런 논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지금 다 무상할당 계속하면 기업은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막 배출한 다음에 감축기술 개발을 위해서 계속 정부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의견수렴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드리면 저희가 4차 기본계획 할 때 이미 국내 산업 보호조치를 전제로 해서 탄소누출업종의 유상할당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고려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산업계를 그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렇게 방향이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군다나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부칙으로 시행일을 늦추더라도 일단은 법을 바꿔 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12번 항목에서 ①번하고 ⑥번은 이제 합의가 돼서 이건 쟁점이 없어졌고.

아까 박지혜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④번도 총 무상할당비율이 10번 안건에서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들어간 거라서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④번도 이렇게 통합이 돼서 칠회가 된 거라고 보면 되니까 ④번도 이제 쟁점이 아니고. ⑤번은 산업계 의견 확인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 듣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제 ②번하고 ③번만 남았는데 ②번하고 ③번이 소위 말하는 유상할당비율에 대한 것

이잖아요. 거기는 두 가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지금은 법에서 이 숫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법에 규정할 거냐?

○소위원장 김소희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에 규정한다고 하면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요. 저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 주시면 저도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이 부분은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 숫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배출권거래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저도 법에 규정하는 것과 또 수치를 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을 세분화해서 저탄소기술을 적용하는 로드맵이 있고 그에 맞춰서 배출권 할당을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저탄소화 기술이 초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실증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상용화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맞는 배출권 할당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 유·무상할당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 놓고 따라오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기술 개발은 되어 있지 않은데 배출권 유상으로 돌리고 배출권 가격도 오르면 그거는 그 기업들한테 그대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법의 취지, 그러니까 탄소시장을 형성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저도 김용태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여쭤봅시다. 우리가 10%, 예를 들면 무상비율 90% 그리고 또 80%, 50%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어요?

무상할당 80%로 축소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로 인한 결과, 성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단순히 지난번에 90%니까 80%로 낮춰서 뭔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자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90%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80%일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할당비율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무상할당하고 유상할당이 거의 거울과 같은 건데 저희가 유상할당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할 때 그런 거는 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범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탄소중립,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물까지 나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런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보내 주세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김소희 차관님, 저도 그런 자료는 본 적이 없는데요.

실은 법에서 숫자를 제시하려면 그 근거랑 수반되는 비용추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런 사유 때문에 유·무상의 할당비중을 법에 넣지 않습니다, 그 밑의 하위규정에 다 넣지요. 그런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비용추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거는 아니고요. 제 말씀은 아까 정부 측 의견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배출권거래제 계획을 수립할 때 거시경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본적인 경제지표라든지 GDP에 미치는 영향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GDP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직접적인 목표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무상할당을 90% 했을 때, 70% 했을 때, 50% 했을 때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것은 저희가 관련 자료 조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 한번 보내 줘 보세요.

○송재봉 위원 저도 잠깐 의견을 좀 드리면, 시행령상으로 보면 3차 계획기간에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상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유상할당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적용할 경우에 역으로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역으로 시행령상에 퍼센티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법에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의 또 국가의 정책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규정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게 이 탄소감축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실제로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을 봐줘야 되는 건지, 실제 그 기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더 낮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 숫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 안에 퍼센티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아직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마련이 안 된 상황이라서 법을 급하게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오늘 점심시간이라도 또는 그 이후 시간이라도 해서 이 법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업들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법이 또 마련돼야 할당계획이 마련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②, ③번 관련해서는 저랑 박지혜 의원님이 발의자니까 제가 발의자 중에 1명인 건데 사실은 법에 명시하고 또 실질 유상할당비율 기준으로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고집하게 되면 오늘 처리하거나 빠른 논의가 정리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제 기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할당·유상할당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게 도저히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님도 발의자시니까 의견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비슷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에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기존의 시행령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류사항까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박지혜 위원님 의견까지 듣고.

○**박지혜 위원** 의견을 구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정말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취지에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배출권 할당비율과 관련해서는 유상으로, 이게 유상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수년간 계속 우리가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4%밖에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이 탄소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너무나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 유상할당비율을 최저한도라도 법에 규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50% 같은 경우는 전환 부분에 100% 정도를 유상할당 하고 산업 부분에 10% 정도 시작한다면 50%는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기본계획 기간에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안을 발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당계획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이소영 위원님께서 좀 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게 철회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음 계획기간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유상할당비율과 관련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저도 오늘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펜딩된, 보류된 건들이 있어 가지고 제 법안도 안 되고 이소영 의원님 법안도 안 되고 박지혜 의원님 법안도 지금 통과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무상할당의 숫자를 넣지 않는 걸로 일단 지켜보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 단계에서 법으로 또 이것을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정말 환경부가 작동을 잘 못 시킨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정말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숫자를 안 넣는 걸로 합의를 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통과를 하되, 그러면 지금 4차 할당

계획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반드시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으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김소희 그 부분을 지금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 회의 때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을 잡을 수는 없는 형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 명확화’ 안에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좀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안정화 조치에서 저는 수량이었고 가격 말씀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량 2개 다 고려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것은 이미 통합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12번까지 했고 13번부터, 15번 부칙이 있고 부칙은 정리 안 하면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은요 뒤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한 쟁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의견을 나누고, 보류된 게 지금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 놨는데 한 5개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뒷부분은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쟁점 같아서……

○소위원장 김소희 13번은 어쨌든 지금 앞단의 할당 취소 부분이랑 연결된 부분이야 가지고……

○이소영 위원 그것도 어차피 보류니까.

○소위원장 김소희 그것은 보류니까, 일단 보류라서.

14번은 논의하시고, 14번은 과정금 이게 박정 의원님 안인데 이게 논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박정 의원님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의사진행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소희 금융위원회 건도 남아 있어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위원장님, 회의 중간에 금융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7번 관련해 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14번 의견에 대해서 잠시 수석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서 보류는 보류, 그냥 통과시킬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싶은데 다시 어떻게……

○이소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자면 일부를 통과시키면요 나머지는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를 시켜야지만 나머지가 폐기되지 않고 통과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리다가 중간에 멈춰진 내용이 뭐냐면 지금 13번은 어차피 보류고 15는 간단한 부칙 이런 내용이고 14번 박정 의원님 관련해서는 길게 논의하지 않아도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 안에 이 내용을 일독을 하고 보류된 부분은 간사 간에 한두 시간의 시간을 두고 협의하신 다음에 오후에 잠깐 모여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의결할 거면 다른 위원님들 계실 때……

○소위원장 김소희 계셔야 되니까. 지금은 정족수가 되기는 하거든요, 6명이.

○이소영 위원 정족수는 돼요, 일단. 그런데 지금 의결은 어차피 못 하고……

○소위원장 김소희 지금 의결은 어려운……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다른 위원님 계실 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오후에 또 할 거면.

○소위원장 김소희 예.

○이소영 위원 그래서 오후에 간사 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잠깐 모여서 의결을 하면,
저희가 또 기후특위 전체회의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소희 14번도 산업부 의견이 조금 달라서……

○이소영 위원 14번, 제가 빠르게 그냥 정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김소희 수석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산업부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이소영 위원 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의 14번 항목은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경우에 과징금 납부도 하고 그리고 미제출한 배출권 또한 주무관청에 제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 안 중에 또 하나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1t
당 10만 원의 범위에서'라고 현행 규정은 되어 있는데 '10만 원의 범위'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 또한 산
업통상자원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95쪽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검토의견 내용은 앞에 논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위법령 개정 소요 시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제4차 할당계획 시행과 더불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즉 유·무상
할당 지표 변경, 할당 업종 구분 단위 변경, 조기감축실적 인정 그 부분 삭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 등—이 부분은 논의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이런 부분들은 계획기간 도래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맞
췄으면 합니다.

그리고 96쪽에 있는 내용은 논의 안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저희가 14번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
은, 미제출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다시 반납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과징금 상한이 지금 현
행 1t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4차 계획기간이면 3차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가
격이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저희도 목표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도 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규정해 주신 상한 수준을 그냥 유지해 주셨
으면 하는 게 산업계 의견입니다.

○이소영 위원 90페이지 자료랑 완전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14번의 쟁점이 지금 2개인데 첫 번째 것은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배출권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중적 부과다 이런 의견이 지금 산업부 의견으로 적혀있고요. 두 번째 이 과징금 상한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엣것은 의견이 없고 뒤의 상한 10만 원은 반대다?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소희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생각하신 거랑.

지금 배출권도 내고 제출하고 과징금도 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 주셨던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배출권 실물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①, ②번이 있잖아요, 14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둘 다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소영 위원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의견을 늦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그러면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으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예.

○소위원장 김소희 환경부는 두 가지 안에 다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는 사실……

○소위원장 김소희 1번 안만에 대한 동의셨지요? 1안.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는 1번 안 경우에 어쨌든 과징금을 제출하고 또 실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 정도입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첫 번째 부분은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같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배출권 가격이 한 1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1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제형별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현재 있는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경제형별 합리화랑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경제형별 합리화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그 부분은 제가 예를 잘못 들었으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 원 한도라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는 않다 그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겁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4차 계획기간부터 정상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3차 계획기간까지는

거래제가 작동을 안 한 건데,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4차 계획기간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정상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선진국이 배출권 가격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됩니까, 차관님? 유럽은 얼마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10만 원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가 돼야 되지요? 지금처럼 1만 원대가 유지되면 이 거래제는 폐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4만 원, 5만 원을 목표로 해서 2030년 기준으로 쭉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배출권 가격의 3배 상한이 10만 원이다? 정부가 이것 정상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 빨리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과정금 상한 규정 이것 10만 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 이견이 없다고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상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면 박정 의원님 안은 좀 과하겠다. 왜냐하면 박정 의원님은 내용이 굉장히 강한 안인데, 배출권을 미제출한 거예요. 100만큼 제출했는데 70개밖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30개에 대해서 3배 과금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과정금 냈어도 30개를 추가로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너무 센 규제일 수 있으니까 상한을 없애는 것은, 4차 계획기간까지 가서 상한을 1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진짜 저는 양심이 없는 거라고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박정 의원님처럼 센 안은 통과 안 시키는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 지금 배출권거래제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이 10만 원 상한을 4차에서도 유지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2030년에 배출권 가격이 3만 원, 4만 원도 못 미쳐야 된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상 운영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배출권의 3배 가격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하는 게 10만 원인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까 저희 환경부 의견 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박정 의원님 안은 과정금까지 내고 또 실물 배출권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다고 봤고, 과정금 상한 규정을 없애게 되면 그게 충분히 이행력이 있기 때문에 박정 의원님 안은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 의견입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지금 다 양보한다니까요. 유상할당 법에 명시하고 이런 것 다 지금 포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계획기간이 2030년까지잖아요. 앞으로 5년 후예요. 배출권 가격 정상화해야 되잖아요. 10만 원이 뭐가 많다는 겁니까, 이 법 제정될 때부터 10만 원이었는데? 10년이 훌렸잖아요. 지금 1만 원 이하인 건 정상이 아니라고 다들 아무도 거기에 이견이 없고.

배출권 가격이 우리가 5년 후에 4만 원도 안 됩니까? 이것은 저는 양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앞으로의 5년입니다.

○이소영 위원 이건 앞으로 5년이에요. 기재부 국장님……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수준이 갑자기 뛰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뛰는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권 사서 제출한 사람 뭐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돼서 EU만큼은 아니라도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7만 원 됐다고 치자고요. 그것 힘들게 줄여 가지고 돈 들여서 줄인 회사도 있을 거고 배출권 시장에서 그 몇만 원짜리 사 가지고 제출한 회사도 있을 텐데 그것 책임 다 방기하고 줄이지도 않고 배출권 구매도 안 하고 배 째라 이런 회사한테 10만 원 상한이다, 이게 공정합니까?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 이렇게 망친 데에는 모두의 잘못이 있지만 기재부 환경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재부 잘못도 굉장히 커요. 이것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기재부한테도 있습니다. 책임을 해태한 기업에게 10만 원도 안 됩니까, 5년 후에?

○**소위원장 김소희** 국장님, 이것은……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잠깐만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것 5년 후를 상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김소희** 아니, 이게 계획기간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박정 의원님 안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지금 의견까지 폭력한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 정도는 부처 간 논의하셔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저희 앞으로 그 가격이 상승돼야 기후대응기금도 전혀 또 그것도 지원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건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모습이 갑자기 뛰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소위원장 김소희** 뛰는 부분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 줄 필요는 있지요, 그게 시그널이니까. 그런데 지금 숫자도 안 넣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앞에 저희가 많이 양보를 했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산업부도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는 동의하고요, 앞에 박정 의원님 의견은 조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 측.

○**소위원장 김소희** 박지혜 위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신가요?

○**박지혜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박정 의원님의 안이 기업의 부담 측면을 생각하면 과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배출권 가격의 4배를 내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배출권거래제법의 입법 목적이 배출허용총량 지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별도의 취지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 삭제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지만 그동안 과징금을 냈던 업체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들이 추가 배출한 것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개정안의 취지가 그렇다 하는 부분은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혹시 서범수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서범수 위원**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는 받아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산업부도 동의를 하신 거니까 그것은 하고, 이중적 부과에 대해서도 저는 과징금도 미수납된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것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일단 이것을 하나 받고 이중 부과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징금 상한 규정 삭제하는 것하고……

○박지혜 위원 이소영 의원안으로 통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소희 이것은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까지 동의를 했으니까.

○이소영 위원 동의가 된 거예요, 금융위도?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아까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김소희 금융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의결을 못 하겠네요, 숫자가 안 돼 가지고.

일단 그래서 아까 그 자구 수정이랑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박지혜 의원안에 대해서 시장안정화 조치 부분에서. 몇 가지 안들을 저희가 간사랑 논의를 하고 오늘 이 법안 몇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부칙이, 딱 하나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배출권 할당계획하고 관련된 규정들을 계획기간 도래일에 시행하도록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할당계획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계획이 돼요. 나중에 소송 걸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배출권 할당계획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소희 의원안에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시행으로 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 법에 따라서 할당계획이 마련되는 거지요. 법에 근거가 없는 계획은 위법한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MSR 발동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할당계획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위에 쓰신 것처럼 6개월이든 1월 1일이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의견의 이 시행일을, 지금 부칙 15번 얘기하는 건데요. 배출권 할당계획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즉시 시행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 나중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박정 의원님이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별하여 가지고 그것은 1월 1일이든 6개월이든 정부가 필요한 준비기간 반영해서 그렇게 부칙을 정리하는 게 합법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맞습니다.

지금 4차 할당계획 때문에 바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가져오시면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반영하여 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하고 다시 문자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몇 개 있잖아요. 한 3~4개 정도가 있는

데……

○소위원장 김소희 그 정리를 따로 할게요. 간사 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간사 두 분이 조율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면 우리가 합의해 주는 걸로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걸 물어보셔야지.

○소위원장 김소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금융위 끝났으니까 한 3건 정도 지금 보류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합의를 해서…… 3건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간사와 논의를 해서, 부처랑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의결을 위한 절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이따가 오후에 다시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까 부칙 관계에 있어서 배출권 할당 관련해서는 적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나눠지는 게, 지금 2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하고 6개월 이후에 하는 것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후속 조치가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굳이 6개월 정도가 걸립니까? 아예 그냥 나머지는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버리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원래 지금 할당대상업체에서 할당대상으로 바뀐다면서요, 문구 자체가? 그런데 조문 자체가 전부 할당대상업체로 다 살아 있어요.

○소위원장 김소희 그것 다 한꺼번에 바꾸신다고……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그 부분은 일부 조문만 지금 바꾼 겁니다, 개정안이.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법조문 안에 들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그러니까 무상할당과 관련된 해당 조문만 고친 겁니다.

○서범수 위원 해당 조문만.

○이소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통과하기 전까지 문구 정리하신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예.

○소위원장 김소희 혹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의견을 좀 여쭤봐서, 저희가 2시 반, 3시, 언제 다시 하면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그 조율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소위원장 김소희 그래도 다른 분들이 계셔야지 의결이 가능합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소희 오늘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한 2시 10분쯤에 하시면……

○소위원장 김소희 2시, 아예 빨리 할까요?

○서범수 위원 빨리 합시다.

○소위원장 김소희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잘 도와주셔 가지고, 쟁점이 됐던 내용을 제가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첫 번째, 소위 안건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었던 시장안정화제도 관련해서 최저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에 대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겠다고 박지혜 간사님, 합의된 걸로 알면 될까요?

○박지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소희 그리고 두 번째, 소위 안건 3번, 35페이지 내용인데 가동실적의 증가 부분은 개정안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증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살려서 하기 때문에 가동실적의 증가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10번 72페이지, 이 부분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계획기간별 무상할당비율을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가 돼서 개정안 부분은 삭제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각 정의 차원의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소위 안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 부분은 기존의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기로 해서 개정안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5번, 소위 안건 12번 7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도 지금 5번 부분, 6번 부분 모두 다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안건 15번, 95페이지 이것은 부칙에 해당되는…… 지금 이 내용을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되 4차 할당계획 시행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 여기 괄호 친 내용은 계획기간 도래일에 맞춰 공포 후 1개월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차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마지막의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1개월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 법에서 개정되는 사항하고 시행령하고 연동되는 관계가 있어서 시행령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할당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이 효력을 발생해야 그 할당처

분의 적법성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은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1개월 내에 시행령을 맞춰서 만들려고 하면 입법예고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우려하시는 건데 시행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 법은 공포 후 1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조금 늦게 개정되는 것은 저희가 양해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의사록에 남기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하여튼 정부에서도 시행령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78페이지를 다 미반영하는 건가요? 12조 3항의 ‘유상으로 하되’ 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소희 5번, 6번만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미 합의가 됐었고요.

○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소희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득구 김소희 김용태 김종민 박정현 박지혜 서범수 송재봉 이소영 조은희

○첨가 위원(1인)

차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환경부

차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